



## 대학 만족도 조사 시행지침

규정번호	3-1-49
제정일자	2016.02.1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1
총페이지	3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 (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에 대한 대내·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정보수집, 분석 및 지속적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0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대학 ‘대학 만족도 조사’의 계획, 시행, 분석, 평가 및 개선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09.01.>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만족도 조사’라 함은 재학생 만족도 조사, 졸업생 만족도 조사, 산업체 만족도 조사,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학생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로 구분한 5개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개정 2017.09.01.>
2.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9.01.>
  - 가. 재학생 만족도 조사 : 재학생
  - 나. 졸업생 만족도 조사 : 졸업생
  - 다. 산업체 만족도 조사 : 산업체 담당자
  - 라.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 현장실습 평가 담당자 및 현장실습 이수 학생
  - 마. 학생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학생참여 프로그램 및 경진대회 등의 참여자
3. ‘만족도 지수’라 함은 대학 만족도 조사별로 조사항목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표현하는 지수를 말한다.<개정 2017.09.01.>
4. ‘조사담당자’라 함은 대학 만족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09.01.>

**제4조(책임과 권한)** ① (주관부서) 대학 만족도 평가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전체 대학 만족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결과를 보고한다.<개정 2017.09.01.>

② (담당부서) 대학 만족도 조사의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09.01.>

1. 재학생 만족도 조사 : 학생지원팀
2. 졸업생 만족도 조사 : 교육운영팀
3. 산업체 만족도 조사 : 취업창업지원팀
4.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 현장실습지원센터
5. 학생참여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산학협력지원팀

③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2017.09.01.>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의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3.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실시

## 제 2 장 계획수립 및 시행

**제5조(대학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17.09.01.>

② 조사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적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09.01.>

1. 조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조사 담당부서
3. 조사대상
4. 조사시기
5. 조사방법
6. 조사항목 및 문항<개정 2017.09.01.>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조사 실시)** 담당부서의 조사담당자는 설문조사, 인터뷰, 유선통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7.09.01.>

## 제 3 장 결과처리

**제7조(보고 및 활용)** ① 담당부서 조사담당자는 대학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관부서로 제출한다.<개정 2017.09.01.>

②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취합·정리하여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 및 학부(과)에 통보하여 대학 만족도 지수 산정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17.09.01.>

**제8조(사후관리)** ① 관련부서에서는 대학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전년대비 개선사항 및 향후 개선계획을 도출하여 소관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장의 확인 후 사업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1.>

② 관련부서장은 평가 결과가 반영된 사업운영계획을 주관부서로 제출하고, 주관부서와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09.01.>

## 부 칙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